

제290회 임시회
2010. 6. 18(금)

심사보고서

○ 충청북도의회 사무기구설치 및 지원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의회
행정소방위원회

충청북도의회 사무기구설치 및 직원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 보고서

2010. 6. 18.
행정소방위원회

I.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0년 5월 27일
충청북도지사

2. 회부일자 : 2010년 6월 3일

3. 상정 및 의결일자

제290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소방위원회(2010. 6. 15.)
상정,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 질의·토론, 심사의결(원안의결)

II.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행정국장 강길중)

1. 제안이유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서, 시·도 의회에 교육위원회를 설치하고 교육위원회 사무직원을 교육감이 임명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06.12.20 개정, 부칙에서 '10. 7. 1. 설치토록 규정)
- 도의회 사무기구의 설치 및 의회 사무직원의 정수에 관한 사항을 상위 법령에 맞게 개정하고,
-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만들기 기준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상위 근거법령 명시 문구 중 「지방자치법」 외에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문구 추가 (안 제1조)

- 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수에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외에 「충청북도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문구 추가 (안 제5조)
- 목적조항(제1조) 이후 최초로 나오는 용어에서 약칭 사용 등 일부 문구 수정

III. 검토보고 요지

(행정소방수석 전문위원 장용대)

이번에 개정하는 충청북도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개정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설되는 「교육위원회」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의 정수를 충청북도의회 사무처에 두려는 것임.

주요내용은

- 충청북도교육청 교육위원회 의사국이 폐지됨에 따라 충청북도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7명을 충청북도의회 사무처내 교육위원회 지원조직인 전문위원에 대한 정수관리 근거규정, 사무직원의 정수와 직급별 정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1조, 안 제5조에 추가하고,
- 안 제2조 제3항에 “사무처의 하부조직과 그 사무분장 등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명문화 하고 그 밖에는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기준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임.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 2010년 2월 26일 개정공포됨에 따라 그동안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처리를 위하여 운영하였던 충청북도교육청내에 교육위원회와 지원조직인 의사국이 폐지되고 충청북도의회내에 교육위원회와 전문위원실을 설치운영하려 것으로,

- 충청북도교육청에서는 교육위원회 지원조직인 전문위원회 정원을 7명으로 하여 제290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에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정원조례」를 일부개정 중에 있음.
 - 충청북도의회에서는 교육과 학예를 전담하는 상임위원회 교육위원회를 신설하는 「충청북도 위원회 조례」를 2010년 5월 14일 개정공포 하였음.
 - 따라서,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충청북도의회 사무처기구에 교육위원회 사무처리에 전문적 지식을 가진 전문위원회 조직과 정원을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으로 구성하고, 정원의 관리기관으로 충청북도의회로 정하는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은 적합한 조치라 판단됨.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 2010년 2월 26일 개정된 반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에 관한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은 2010년 6월 7일 까지 입법예고 되었고, 행정안전부에서는 2010년 4월 26일 시도에 「시도 교육위원회 지원조직 설계 및 정원 운용방안 안내」를 통보함.
- 또한 개정전 조례에서 제6조(시행규칙)에 두었던 사무처의 하부조직과 그 사무분장 등을 규칙을 두는 조항을 안 제2조 제3항으로 신설하는 것으로
- 자치법규의 구성 및 규정순서는 명문상 일정한 기준은 없으나 조문을 배열할 때 형식적 배열을 고려하여야 하는데 제2조 제명을 「사무처의 설치」에서 「사무처의 설치 등」으로 확대하여 사무분장 사항까지 규정하려는 것과
 - 제2조 제3항에서 사무처의 하부조직과 그 사무분장 등을 규칙으로 정한다고 하면서 제6조(시행규칙)에서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하였는데 제6조에서 정하는 규칙에 대한 내용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함.

IV.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V. 토론 요지 : “생 략 ”

VI. 심사 결과 : 원안의결

VII. 소수의견 요지 : 없음

VIII.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IX.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충청북도의회 사무기구설치 및 직원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충청북도의회 사무기구설치 및 직원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505
------------	-----

제출연월일 : 2010년 5월 27일

제 출 자 : 충 청 북 도 지 사

1. 제안사유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서, 시 · 도 의회에 교육위원회를 설치하고 교육위원회 사무직원을 교육감이 임명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06.12.20 개정, 부칙에서 '10. 7. 1. 설치토록 규정)
- 도의회 사무기구의 설치 및 의회 사무직원의 정수에 관한 사항을 상위 법령에 맞게 개정하고,
-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만들기 기준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상위 근거법령 명시 문구 중 「지방자치법」 외에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문구 추가 (안 제1조)
- 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수에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외에 「충청북도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문구 추가 (안 제5조)
- 목적조항(제1조) 이후 최초로 나오는 용어에서 약칭 사용 등 일부 문구 수정

3. 의안전문 : 붙임

4. 신 · 구조문대비표 : 붙임

5. 관계법령 발췌 : 붙임

충청북도조례 제 호

충청북도의회 사무기구설치 및 직원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의회 사무기구설치 및 직원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0조 및 제91조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17조에 따라 충청북도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의회 사무기구의 설치와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사무처의 설치 등) ① 충청북도의회(이하“의회”라 한다)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에 사무처를 둔다.
② 사무처는 의회의장(이하“의장”이라 한다)의 지휘·감독을 받아 의회의 운영 등 입법 활동에 관련된 사무를 처리한다.
③ 사무처의 하부조직과 그 사무분장 등을 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사무처장(이하“처장”이라 한다)”을 “사무처장”으로 하고, 같은조 제2항 중 “처장”을 “사무처장”으로 하며, “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을 “의장”으로 한다.

제4조 중 제3항을 삭제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 (직원의 정수) 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수는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와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로 정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 표

현 행	개 정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 90조 및 제91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북도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의회 사무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인 사무직원의 정수(이하 “정원”이라 한다) 및 사무분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0조 및 제91조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 4조 및 제 17조에 따라 충청북도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의회사무기구의 설치와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사무처의 설치) ① 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에 사무처를 둔다. ② 사무처는 의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의회의 운영 등 입법활동에 관련된 사무를 처리한다.</p>	<p>제2조(사무처의 설치 등) ① 충청북도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에 사무처를 둔다. ② 사무처는 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지휘·감독을 받아 의회의 운영 등 입법 활동에 관련된 사무를 처리한다. ③ 사무처의 하부조직과 그 사무분장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p>
<p>제3조(사무처장) ① 사무처에 사무처장(이하 “처장”이라 한다)을 둔다. ② 처장은 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통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p>	<p>제3조(사무처장) ① 사무처에 사무처장을 둔다. ② 사무처장은 의장의 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통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p>
<p>제4조 (전문의원) ①~② (생략) ③ 전문위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 이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의회 사무처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p>	<p>제4조 (전문의원) ①~② (해당없음) <삭 제></p>
<p>제5조(직원의 정원) 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원은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로 정한다.</p>	<p>제5조(직원의 정수) 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수는 「충청북도 지방공무원정원조례」와 「충청북도교육감 소속지방공무원 정원조례」로 정한다.</p>
<p>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한 기타 필요한 사항 및 사무처의 하부조직과 그 사무분장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p>	<p>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p>

관계법령 발췌

□ 지방자치법

제90조(사무처 등의 설치) ① 시 · 도의회에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처를 둘 수 있으며, 사무처에는 사무처장과 직원을 둔다.

② 시 · 군 및 자치구의회에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국이나 사무과를 둘 수 있으며, 사무국 · 사무과에는 사무국장 또는 사무과장과 직원을 둘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사무처장 · 사무국장 · 사무과장 및 직원(이하 이 절에서 "사무직원"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으로 보한다.

제91조 (사무직원의 정원과 임명) ① 지방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수는 조례로 정한다.

② 사무직원은 지방의회의 의장의 추천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무직원 중 별정직 · 기능직 · 계약직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은 지방의회 사무처장 · 사무국장 · 사무과장에게 위임하여야 한다.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조 (교육위원회의 설치) 시·도의회에 교육·학예에 관한 의안과 청원 등을 심사·의결하기 위하여 상임위원회(이하 "교육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7조 (교육위원회 사무에 대한 지원) ① 교육위원회 및 시·도의회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의회의 사무처에 지원조직과 사무직원을 둔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두는 사무직원은 지방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두는 사무직원은 교육위원회 위원장의 추천에 따라 교육감이 임명한다.